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목 차

< 일 반 회 계 >

○ 기후환경정책과	-----	1
○ 미세먼지대책과	-----	35
○ 환경안전관리과	-----	79
○ 물관리정책과	-----	101

< 특 별 회 계 >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151
--------------------	-------	-----

기 후 환 경 정 책 과

기후환경정책과

1.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6
2.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8
3.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부지 매입	12
4. 적정기술 공유센터 옥상 방수공사	14
5. 적정기술 보급 및 교육	16
6.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8
7.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지원	20
8.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22
9.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24
10.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조사	26
11.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지원.....	28
12.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도자체)	30
1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32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정책사업	공감환경정책구현
	단위사업	환경정책협력 강화
	세부사업	환경정책 개발 육성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환경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공연 및 체험활동 등을 통해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생활 속 환경의식 변화와 실천을 제고
- 사업 위치 : 충남 도내
- 사업 기간 : 2020. 5. ~ 12.
- 예 산 액 : 21,400천원
 - ※ 감액 사유 : 환경부 사업 축소에 의한 예산 감액
- 사 업 량 : 환경문제를 소재로 한 공연, 미술 전시 등 개최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환경부 공모사업)
- 사업시행주체 : 민간단체(벽옥두예술단)
- 사업 내용 : 환경문제를 소재로 한 예술 공연, 전시회, 교육 추진
- 지원근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21,400천원) ○ 출연료 및 인건비 17,400천원 - 총감독, 무대감독, 음악감독, 배우, 강사비 등 ○ 무대제작 2,640천원 - 무대제작, 음향 및 무대대여, 각종 영상 편집 등 ○ 홍보비 및 간담회 1,360천원 - 팸플릿, 홍보물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1,400		50,000	21,400	△28,600		
국 비	15,000		35,000	15,000	△20,000		
도 비	6,400		15,000	6,400	△8,6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30,000	3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남성연 (행) 2710	윤여명 (행) 4401	길 훈 (행) 4413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정책사업	공감 환경정책 구현
	단위사업	환경정책 협력 강화
	세부사업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동목표 실천활동 협의체 지원(사업비, 운영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관내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433,599천원
 - ※ 증감 사유 : 의회 조직개편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 이전('19.12.26.)에 따른 임대료·관리비 증가, 회의 참석수당(교통비 포함) 인상[5만원/일→7만원/일, 지속협 운영위원회 결정('20.2.12.)]
- 사 업 량 : 협의회 운영비 1식, 지속가능발전 사업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사업 내용 : 협의회 운영비, 교류협력 사업비, 지속가능발전 사업비 등
 - ※ 금회 증액에 따른 사업내용 : 사무처 사무실 임대료·관리비 등 이전에 따른 운영비, 분과위원회 등 회의운영비
- 지원근거 :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제3항,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제6조, 제10조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국내외협력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협의회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경비 2.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속가능발전 사업비(185,000천원) ○ 정책활성화(30,000천원) - 분과사업(4개) = 20,000천원 - 정책개발사업 = 5,000천원 - SDGs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 5,000천원 ○ 역량강화(24,000천원) - 지속가능발전교육 = 10,000천원 - 충청권지속협 역량강화 워크숍 = 1,000천원 - 청소년환경탐구토론회 = 5,000천원 - 위원 역량강화사업 = 5,000천원 - 협력위원회 실무자 역량강화 = 3,000천원 ○ 조직연대사업(95,250천원) - 회의운영(총회, 운영위, 분과위 등) = 30,000천원(5,000천원 증액) ※ 당초 : 25,000천원 → 변경 : 30,000천원 / 사유 : 회의 참석수당 인상(5만원/일→7만원/일) - 시군지속협연대사업 = 30,000천원 - 충남지속협 20주년 기념사업 = 30,000천원 - 분담금(전국협의회, 시군협의회, 전국대회 등) = 5,250천원 ○ 국내외 교류협력사업(33,650천원) - 지속가능발전협력교류 = 10,000천원 - 시민사회연대 = 23,000천원 - 충남환경교육협력 = 650천원 ○ 홍보사업(소식지 등) = 2,100천원 ■ 협의회 운영비(248,599천원) ○ 인건비(4인) = 177,427천원 ○ 일반운영비 = 63,772천원(22,500천원 증액) - 사무실 이전 임대비·관리비(추가) = 21,720천원 - 주소변경에 따른 인쇄물 제작(추가) = 780천원 ○ 여비 50천원×8회×12개월 = 5,000천원 ○ 업무추진비 200천원×12개월 = 2,4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33,599		406,099	433,599	27,500	0	
국 비							
도 비	433,599		406,099	433,599	27,5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36,435	436,435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환경협력교육팀	남성연 (행) 2710	유재호 (행) 4402	유용재 (행) 4414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부지 매입	정책사업	기후변화 대책추진
	단위사업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세부사업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칭)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국립기상과학관)를 내포신도시에 건립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기상·기후 연구개발 및 기상과학 전시·체험을 통하여 도민의 기상과학 인식 제고
- 사업 위치 :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內 산학협력시설 부지(1-①-1)
- 사업 기간 : 2018년 ~ 2022년
- 예 산 액 : 1,550,000천원
※ 증감 사유 : (가칭)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부지 매입대금
- 사 업 량 : 19,138㎡(부지면적)
- 사업시행방법 : 부지매입(충청남도), 건축 및 전시·체험시설 설치(기상청)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 지원근거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6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 : 1,550,000천원(2020년도 사업비) ○ 부지매입비 : 6,449,506천원(부지면적 19,138㎡×337천원/㎡) ○ 금회 부지매입비 지급분 · (6,449,506천원 - 4,800,000천원(기납부액) - 99,506천원(선납할인)) ÷ 1,550,000천원 ※ 총사업비 : 193억원(기상청 128억원, 충남도 65억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449,506	4,899,506		1,550,000	1,550,000		
국 비	1,000,000	1,000,000					
도 비	3,949,506	3,899,506		50,000	50,000		
기 타	1,500,000			1,500,000	1,500,000		부담금

* 보조율 : 도비 100%(부담금 포함)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700,000	3,70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반영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8년 (2019~2023)	2018.10월	제306회임사회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남성연 (행) 2710	윤여명 (행) 4401	박충환 (행) 4412

적정기술 공유센터 옥상 방수공사	정책사업	기후변화 대책추진
	단위사업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세부사업	적정기술 공유센터 보수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적정기술 공유센터 보수를 통한 사용자·방문객에 안전한 환경 제공 및 재산보호
- 사업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39 농업기술원 내 충남 적정기술 공유센터
- 사업 기간 : 2020. 5. ~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
- ※ 신규편성 사유 : 충남 적정기술공유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위한 종합건설사업소 합동점검('20.2.10.) 결과 옥상 물고임, 균열에 따른 건물 누수로 인한 이용자 감전사고, 누전 화재, 각종 설비 부식 우려
- 사 업 량 : 충남 적정기술공유센터 1개소(옥상 면적 571.69㎡)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농업기술원 사업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 적정기술 공유센터 옥상 방수공사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관리책임)

① 도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적정기술 공유센터 옥상 방수공사 : 50,000천원 ○ 옥상 구매 작업 → 균열 보수 → 복합도막방수(복합시트지 + 우레탄 방수) + 쿨루프 처리 1식 × 50,000천원 = 50,000천원 ※ 충남 적정기술공유센터 옥상 면적(571.69㎡) = 건축 면적(426.61㎡) + 테두리(47.36㎡) + 옥상 수직부(97.72㎡)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50,000	50,000		신규
국 비							
도 비	50,000			50,000	5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책팀	남성연 (행)2710	홍순만 (행)4404	정관용 (행)4421

적정기술 보급 및 교육	정책사업	기후변화 대책추진
	단위사업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세부사업	적정기술 보급 및 교육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적정기술 보급 및 교육 활동 지원을 통한 적정기술 확산
- 사업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39 농업기술원 내 충청남도 적정기술 공유센터
- 사업 기간 : 2020. 5. ~ 12월
- 예 산 액 : 30,000천원
- ※ 과목변경 사유 : 기존 민간위탁금(307-05)으로 편성하였으나 민간위탁심의위 심의결과 민간경상사업 보조(307-02) 통계목으로 편성 권고
- 사 업 량 : 적정기술 보급 및 교육, 적정기술 활용 제작 등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단체
- 사업 내용 : 적정기술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 활동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5. 도는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5조(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③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충청남도지사는 충남형 적정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등의 계획을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적정기술 보급 및 교육 : 30,000천원 ○ 적정기술 전문강사단 양성과정 : 10,000천원 - 강사비 : 100,000원×10회 = 1,000천원 - 재료비 : 400,000원×10회 = 4,000천원 - 교재제작비 : 1,000,000원×5종 = 5,000천원 ○ 적정기술 도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10,000천원 - 강사비 : 100,000원×1명×5회 = 500천원 - 재료비 : 140,000원×10명×5회 = 7,000천원 - 교재제작비 : 250,000원×10종 = 2,500천원 ○ 충남형 적정기술 보급 확산 : 10,000천원 - 워크숍 등 : 5,000,000원×1식 = 5,000천원 - 제작비(시제품 제작 등) : 5,000,000원×1식 = 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30,000	30,000			과목변경
국 비							
도 비	30,000		30,000	3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책팀	남성연 (행)2710	홍순만 (행)4404	정관용 (행)4421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정책사업	자연환경 보호(환경보호/자연)
	단위사업	자연환경 보호
	세부사업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사전예방으로 농민의 안정적 영농활동 도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4~12.
- 예 산 액 : **357,800천원**
 - ※ 증감 사유 : 환경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야생동물 피해농가의 농경지에 대해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
- 지원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795,000천원(당초 748,000천원, 증 47,000) *○천안시 90,166(당초 66,666) ○공주시 28,000 ○보령시 33,333 ○아산시 40,000 ○서산시 170,000 ○논산시 83,334 ○계룡시 33,334 ○당진시 20,000 ○금산군 38,333 ○부여군 50,000 ○서천군 20,000 *○청양군 63,500(당초 40,000) ○홍성군 50,000 ○예산군 25,000 ○태안군 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95,000		748,000	795,000	47,000		
국 비	238,500		224,400	238,500	14,100		
도 비	119,300		112,200	119,300	7,100		
시군비	119,200		112,200	119,200	7,000		
기 타	318,000		299,200	318,000	18,800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15%, 시군비 15%, 기타 40%(자부담)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48,800	448,8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생태환경팀	남성연 (행) 2710	김윤섭 (행) 4403	이기백 (행) 2717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지원	정책사업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	자연환경보호
	세부사업	충남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조난, 부상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 치료 등을 위한 구조센터 운영 관리
- 사업 위치 :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내)
- 사업 기간 : 2020. 1. 1.~2020. 12. 31.
- 예 산 액 : 556,667천원
 - ※ 증감 사유 : 환경부 사업량 감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일부 감액
- 사 업 량 : 구조·관리센터 운영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 내용 :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8인), 일반운영비(진료물품, 동물먹이, 시설유지보수, 차량유지 등) 등 제반경비를 지원하여 적정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 관리 체계가 유지되도록 함(연 1,500여건 구조·치료)
- 지원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지원 ○ 인건비(8인) 402,000천원 *(8인) 의사2, 재활관리사6 ○ 치료 및 먹이 구입 34,600천원 ○ 일반운영비 25,761천원 ○ 시설유지보수 및 차량유지 38,500천원 ○ 기타 비용 55,80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56,667		560,000	556,667	△3,333	0	
국 비	167,000		168,000	167,000	△1,000		
도 비	389,667		392,000	389,667	△2,333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556,667	556,667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생태환경팀	남성연 (행) 2710	김윤섭 (행) 4403	박명실 (행) 4416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정책사업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	자연환경보호
	세부사업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통 계 목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402-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조난 또는 부상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 치료 등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체계 구축
- 사업 위치 :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내)
- 사업 기간 : 2020. 4 ~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200,000천원
- ※ 증감 사유 :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추정 반영
- 사 업 량 : 대형조류 재활 훈련장 설치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 내용 : 대형조류(독수리 등)에 대한 구조, 치료 후 야생적응 훈련을 위한 재활 훈련장 신축
- 지원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 대형조류 재활 훈련장 640㎡ 1식 200,000천원 - (규모) 면적 640㎡, L20m×W32m×H6m - (설계비) 10,000천원, (설치비) 176,500천원, (부대비등) 13,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200,000	200,000		신규
국 비	100,000			100,000	100,000		
도 비	100,000			100,000	10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생태환경팀	남성연 (행) 2710	김윤섭 (행) 4403	박명실 (행) 4416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정책사업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	자연환경보호
	세부사업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급증에 의한 생물다양성 훼손 문제 등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퇴치사업 추진 지원
- 사업 위치 : 5개 시·군(천안, 보령, 서산, 부여, 서천)
- 사업 기간 : 2020.4.~2020.12.(신규사업)
- 예 산 액 : 45,000천원
- ※ 증감 사유 :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추경 반영
- 사 업 량 : 5개 시군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5개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전문기관 위탁, 인력직접 고용 등을 통한 주요서식처 내 제거사업 및 사후관리
- 지원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사업비 90,000 ○ 천안시 20,000 · (제거대상) 가시박 등 (주요서식처) 천안천, 승천천, 풍세천 등 ○ 보령시 20,000 · (제거대상) 큰입배스 등 (주요서식처) 보령댐, 저수지 등 ○ 서산시 10,000 · (제거대상) 가시박 등, (주요서식처) 도당천, 신당천 등 ○ 부여군 20,000 · (제거대상) 가시박 등 (주요서식처) 금강일원 ○ 서천군 20,000 · (제거대상) 가시박, 돼지풀 등, (주요서식처) 판교천, 갈산천, 단상천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0,000			90,000	90,000	0	신규
국 비	45,000			45,000	45,000		
도 비							
시군비	45,000			45,000	45,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생태환경팀	남성연 (행) 2710	김윤섭 (행) 4403	박명실 (행) 4416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	정책사업	자연환경 보호(환경보호/자연)
	단위사업	자연환경 보호
	세부사업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 조사
	통 계 목	연구용역비(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지질유산 보전 및 현장체험 교육·생태관광에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5개 시·군(천안, 아산, 예산, 홍성, 청양)
- 사업 기간 : 2020.6.~2021.4.(신규사업)
- 예 산 액 : 45,000천원
 - * 신규 편성 사유 : 「충청남도 지질공원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준비
- 사 업 량 : 학술연구용역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연구기관 위탁 시행
- 사업 내용 :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대상지 추가 발굴 및 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
- 지원근거 : 자연공원법 제2조,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조사 ○ 국가지질공원 인증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 1식 = 4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5,000			45,000	45,000		신규
국 비							
도 비	45,000			45,000	45,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20.4.13 심사완료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생태환경팀	남성연 (행) 2710	김윤섭 (행) 4403	박명실 (행) 4416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의료폐기물 처리비 등 지원	정책사업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	자연환경보호
	세부사업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조난, 부상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 치료 등을 위한 구조센터 운영 관리
- 사업 위치 :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내)
- 사업 기간 : 2020. 1. 1.~2020.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
- ※ 증감 사유 : 매년 구조 개체수 증가에 따른 사체처리비 등 운영비 지원(5년간 운영비 동결)
- 사 업 량 : 구조센터 운영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 내용 : 사체처리비 등 의료폐기물 처리, 치료물품 및 먹이 구입 등 구조센터 운영 관리
- 지원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사체처리비 등 의료폐기물 처리비 및 치료물품 구입비 등 지원 ○ 의료폐기물 처리 : 18,250천원 · 의료폐기물 7,300원(단가)×2,500kg = 18,250천원 ○ 치료물품 등 구입 : 19,750천원 ○ 먹이 구입 : 1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50,000	50,000		신규
국 비							
도 비	50,000			50,000	5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생태환경팀	남성연 (행) 2710	김윤섭 (행) 4403	박명실 (행) 4416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도자체)	정책사업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	자연환경보호
	세부사업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도자체)
	통 계 목	시설비및부대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급증에 의한 생물다양성 훼손 문제 등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퇴치사업 추진
- 사업 위치 : 충남 전역
- 사업 기간 : 2020.4.~2020.12.(신규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
 - ※ 증감 사유 :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추경 반영
- 사 업 량 :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큰입배스 등 어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전문기관 위탁
- 사업 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 지원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도자체) ○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1식 = 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			20,000	20,000		신규
국 비	10,000			10,000	10,000		
도 비	10,000			10,000	1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생태환경팀	남성연 (행) 2710	김윤섭 (행) 4403	박명실 (행) 4416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정책사업	자연환경 보호(환경보호/자연)
	단위사업	자연환경 보호
	세부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서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사전예방으로 농민의 안정적 영농활동 도모
- 사업 위치 : 서천군
- 사업 기간 : 2020. 5.~12.
- 예 산 액 : 35,000천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수
- 사업 내용 : 야생동물 피해농가 철선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22개소
- 지원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116,600천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22개소 = 116,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16,600			116,600	116,600		
국 비							
도 비	35,000			35,000	35,000		
시군비	35,000			35,000	35,000		
기 타	46,600			46,600	46,6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30%, 기타 40%(자부담)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생태환경팀	남성연 (행) 2710	김윤섭 (행) 4403	이기백 (행) 2717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책과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차, 버스) 40
2.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42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44
4.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 46
5.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48
6.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50
7.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52
8.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 54
9.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56
10.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58

1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60
12.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운영	62
13.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64
14.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사업 ..	66
15.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68
16. 태안군 환경보건센터운영사업	70
17. 2021~20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용역	72
18.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임산부 등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74
19. 환경보건 열린포럼(부서이관)	76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차, 버스)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32,070,000천원
 - ※ 증감 사유 : '20년도 전기버스 신청물량 15대에 대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19년 12월 환경부에서 7대로 확정내시 통보함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2,827대[전기승용차 2,820, 전기버스 7]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전기자동차 구매 시,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차량 구입 비용의 차액 지원
(전기승용차 기준 1,520~1,820만원 지원)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45,160,000천원	
	○ 전기승용차 : 43,770,000천원	
	· 국 비 : 8,000천원/대 × 2,820대 = 22,560,000천원	
	· 도 비 : 3,000천원/대 × 2,820대 = 8,460,000천원	
	· 시·군비 : 4,000~7,000천원/대 × 2,820대 = 12,750,000천원	
	○ 전기버스 : 1,390,000천원	
	· 국 비 : 100,000천원/대 × 7대 = 700,000천원	
	· 도 비 : 50,000천원/대 × 7대 = 350,000천원	
	· 시·군비 : 0~85,000천원/대 × 7대 = 34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5,160,000		46,530,000	45,160,000	△1,370,000		
국 비	23,260,000		24,060,000	23,260,000	△800,000		
도 비	8,810,000		9,210,000	8,810,000	△400,000		
시군비	13,090,000		13,260,000	13,090,000	△170,000		
기 타							

* 보조금 단가 :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8백만원(국비 8.2, 도비 3, 시군비 4~7)
전기버스 대당 최대 235백만원(국비 100, 도비 50, 시군비 0~8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5,110,000	25,11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대기관리팀	이명수 (행) 2740	류광하 (행) 4407	송원상 (행) 2743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4,140,000천원
 - ※ 증감 사유 : 환경부 가내시(160대) 기준으로 본예산 수립 후 '19년 12월 통보된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증액(사업량 200대로 통보)
- 사 업 량 : 200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전기화물차 구매 시,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차량 구입 비용의 차액 지원
(소형 전기화물차 기준 2,700만원 지원)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 5,400,000천원 ○ 전기화물차 : 5,400,000천원 · 국 비 : 18,000천원/대 × 200대 = 3,600,000천원 · 도 비 : 2,700천원/대 × 200대 = 540,000천원 · 시·군비 : 6,300천원/대 × 200대 = 1,26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400,000		4,320,000	5,400,000	1,080,000		신규
국 비	3,600,000		2,880,000	3,600,000	720,000		
도 비	540,000		432,000	540,000	108,000		
시군비	1,260,000		1,008,000	1,260,000	252,000		
기 타							

* 보조금 단가 : 전기화물차 대당 27백만원(국비 18, 도비 2.7, 시군비 6.3)

* 보조율 : 국비 66.7%, 도비 10% 시군비 23.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대기관리팀	이명수 (행) 2740	류광하 (행) 4407	송원상 (행) 274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한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13,997,318천원**
- ※ 증감 사유 : 조기폐차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 인상(50% → 60%) 등에 따른 환경부 확정내시 변경 (‘20.1.2.)
- 사 업 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2,090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및 콘크리트펌프) 대상 폐차 보조금 지원
- 지원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 총사업비 : 12,090대 × 1,608천원/대 = 19,440,720천원 · 국 비 : 12,090대 × 1,608천원/대 × 60% = 11,664,432천원 · 도 비 : 12,090대 × 1,608천원/대 × 12% = 2,332,886천원 · 시군비 : 12,090대 × 1,608천원/대 × 28% = 5,443,40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9,440,720		19,440,720	19,440,720	0		
국 비	11,664,432		9,720,360	11,664,432	1,944,072		
도 비	2,332,886		2,916,108	2,332,886	△583,222		
시군비	5,443,402		6,804,252	5,443,402	△1,360,850		
기 타							

* 보조율 :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1,756,892	11,756,892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응팀	이명수 (2740)	김미희 (4406)	임상숙 (4424)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조기폐차 완료하였거나 조기폐차 예정자가 신차 구매 시, LPG 화물차 구입을 유도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1,612,000천원**
 ※ 증감 사유 :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환경부 증액 확정내시('20.12.)
- 사 업 량 : LPG 1톤 트럭 620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조기폐차를 완료하였거나 조기폐차 예정자가 LPG차 1톤 트럭 구매 시 4백만원 정액지원
- 지원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 ○ 총사업비 : 620대 × 4,000천원/대 = 2,480,000천원 · 국 비 : 620대 × 4,000천원/대 × 50% = 1,240,000천원 · 도 비 : 620대 × 4,000천원/대 × 15% = 372,000천원 · 시군비 : 620대 × 4,000천원/대 × 35% = 86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480,000		1,068,000	2,480,000	1,412,000		
국 비	1,240,000		534,000	1,240,000	706,000		
도 비	372,000		160,200	372,000	211,800		
시군비	868,000		373,800	868,000	494,2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80,000	78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응팀	이명수 (2740)	김미희 (4406)	임상숙 (442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함으로써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2,592,750천원
※ 증감 사유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환경부 증액 확정내시('20.1.2.)
- 사 업 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500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시 보조금 지원
- 지원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 총사업비 : 1,500대 × 3,457천원/대 = 5,185,500천원 · 국 비 : 1,500대 × 3,457천원/대 × 50% = 2,592,750천원 · 시군비 : 1,500대 × 3,457천원/대 × 50% = 2,592,75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185,500		4,367,460	5,185,500	818,040		
국 비	2,592,750		2,183,730	2,592,750	409,020		
도 비							
시군비	2,592,750		2,183,730	2,592,750	409,02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167,422	1,167,422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응팀	이명수 (2740)	김미희 (4406)	임상숙 (4424)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건설기계의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함으로써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2,277,000천원
※ 증감 사유 :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 인상(50% → 60%)에 따른 환경부 증액 확정내시(20.12.)
- 사 업 량 : 건설기계 엔진교체 230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노후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등) 대상으로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지원
- 지원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 230대 × 16,500천원/대 = 3,795,000천원 · 국 비 : 230대 × 16,500천원/대 × 60% = 2,277,000천원 · 시군비 : 230대 × 16,500천원/대 × 40% = 1,51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795,000		495,000	3,795,000	3,300,000		
국 비	2,277,000		247,500	2,277,000	2,029,500		
도 비							
시군비	1,518,000		247,500	1,518,000	1,270,5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60%, 시군비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871,000	2,871,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응팀	이명수 (2740)	김미희 (4406)	임상숙 (4424)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실질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1,452,000천원**
 ※ 증감 사유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 인상(50%→60%)에 따른 환경부 증액 확정내시(“20.1.2)
- 사 업 량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20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 15개 시군
- 사 업 내 용 : 도로용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 차량)를 대상으로 배출 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지원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 총사업비 : $220 \times 11,000\text{천원/대} = 2,420,000\text{천원}$ · 국 비 : $220 \times 11,000\text{천원/대} \times 60\% = 1,452,000\text{천원}$ · 시군비 : $220 \times 11,000\text{천원/대} \times 40\% = 968,000\text{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420,000		1,150,000	2,420,000	1,270,000		
국 비	1,452,000		575,000	1,452,000	877,000		
도 비							
시군비	968,000		575,000	968,000	393,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60%, 시군비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38,200	838,2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응팀	이명수 (2740)	김미희 (4406)	임상숙 (4424)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LPG차 전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375,000천원
- ※ 증감 사유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감소에 따른 환경부 감액 확정내시(‘20.1.2.)
- 사 업 량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사업 150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 15개 시군
- 사 업 내 용 : 2011년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는 15인승 이하(소형) 경유 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5백만원 정액) 지원
- 지원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사업 ○ 총사업비 : 150대 × 5,000천원/대 = 750,000천원 · 국 비 : 150대 × 5,000천원/대 × 50% = 375,000천원 · 시군비 : 150대 × 5,000천원/대 × 50% = 37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50,000		1,083,316	750,000	△333,316		
국 비	375,000		541,658	375,000	△166,658		
도 비							
시군비	375,000		541,658	375,000	△166,658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62,500	262,5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응팀	이명수 (2740)	김미희 (4406)	임상숙 (4424)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로청소차량 구입 지원을 통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등 대기질 개선
- 사업 위치 :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1.
- 예 산 액 : 800,000천원
- ※ 증감 사유 : 당초 경유청소차량(국비 120백만원/대 × 14대)으로 사업 신청 하였으나,
정부의 경유청소차량 보조 중단 정책에 따라 천연가스 및 전기청소 차량으로 계획 변경
- 사 업 량 : 8대[천연가스 4대, 전기 4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 사업 내용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차량 구입시 비용지원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1,600,000천원 ○ 천연가스 도로 청소차량 · 국 비 : 150,000천원/대 × 4대 = 600,000천원 · 시·군비 : 150,000천원/대 × 4대 = 600,000천원 ○ 전기 도로 청소차량 · 국 비 : 50,000천원/대 × 4대 = 200,000천원 · 시·군비 : 50,000천원/대 × 4대 = 2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600,000		3,360,000	1,600,000	△1,760,000		
국 비	800,000		1,680,000	800,000	△880,000		
도 비							
시군비	800,000		1,680,000	800,000	△88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보조금 단가 : 천연가스 청소차 대당 300백만원(국비 150, 시군비 150)

전기 청소차 대당 100백만원(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70,000	27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대기관리팀	이명수 (행) 2740	류광하 (행) 4407	송원상 (행) 2743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야외행사 시 참석자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9,00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 19로 인한 상반기 야외행사 축소로 감액 및 하반기 계절관리제 기간을 대비한 예산편성
- 사 업 량 : 마스크 9,000매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야외행사 참여자들에게 마스크 배포
- 지원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 9,000천원 ○ 마스크 구입비 : 9,000매 × 1천원 = 9,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000		18,000	9,000	△9,000		
국 비							
도 비	9,000		18,000	9,000	△9,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해	당	없	음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응팀	이명수 (2740)	김미희 (4406)	김승윤 (2742)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정용 저녹스[低 NOx(질소산화물)]보일러를 보급하여 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4개 시·군(청양군 제외)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1.
- 예 산 액 : **266,400천원**
 ※ 증감 사유 : 저녹스보일러 추가수요조사 반영으로 환경부 확정내시 변경('20년 2월) 1,423대→1,980대
- 사 업 량 : 1,980[일반 1,820, 저소득층 160]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14개 시·군(청양군 제외)
- 사업 내용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또는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 비용 보조(일반 200천원, 저소득층 500천원)
- 지원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제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제35조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 444,000천원 ○ 일반가정 : 364,000천원 · 국 비 : 120천원/대 × 1,820대 = 218,400천원 · 시·군비 : 80천원/대 × 1,820대 = 145,600천원 ○ 저소득층 : 80,000천원 · 국 비 : 300천원/대 × 160대 = 48,000천원 · 시·군비 : 200천원/대 × 160대 = 3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44,000		345,500	444,000	98,500		
국 비	266,400		207,300	266,400	59,100		
도 비							
시군비	177,600		138,200	177,600	39,4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60%, 시군비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95,600	195,600	-	10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대기관리팀	이명수 (행) 2740	류광하 (행) 4407	송원상 (행) 2743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운영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운영 등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제언을 위한 위원회 운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25,000천원
- ※ 감액 사유 : 정기회의 1회, 분과회의 2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분과회의 1회로 축소
- 사 업 량 : 정기회의 1회, 분과회의 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2조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연구개발, 국제 및 남북 교류·협력
3. 수도권 및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추진 사업
5. 미세먼지 관련 교육·홍보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운영 : 25,000천원 ○ 충청남도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수당지급 및 회의 준비 = 25,000천원 · 정기회의(1회) : 107명 × 100천원 × 1회 = 10,700천원 · 분과회의(1회) : 107명 × 100천원 × 1회 = 10,700천원 · 기타 회의책자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 다과비 등 = 3,600천원 ※ 충청남도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위원 : 130명(위촉직 : 107명, 당연직 : 23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5,000		36,000	25,000	△11,000		
국 비							
도 비	25,000		36,000	25,000	△11,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책팀	이명수 (행) 2740	빈준수 (행) 4405	여동구 (행) 4417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정책사업	생활공해관리
	단위사업	대기질관리
	세부사업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지역의 도민건강보호를 위한 마을단위 저감조치 마련 필요
- 사업 위치 : 4개 시·군(보령, 서산, 당진, 태안) * 미세먼지 취약지역(발전) 주변 마을 5개소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0천원**
 - ※ 증감 사유 : 당초 발전사 기부금으로 사업추진 예정이었으나, 발전사에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안심마을 조성 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4개 시군(보령, 서산, 당진, 태안)
- 사업 내용 : 마을단위 미세먼지 저감시설(식물정화벽, 미세먼지 쉼터, 살수노즐, 창틀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집중 설치
- 지원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300,000		△300,000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0		300,000		△300,000		기부금

* 보조율 : 기타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응팀	이명수 (행) 2740	김미희 (행) 4406	김민정 (행) 4422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사업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질 관리
	세부사업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사업 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기자동차 폐차시 발생하는 배터리의 효율적 관리 및 친환경적 처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1.(신규사업)
- 예 산 액 : **20,150천원**
※ 신규편성 사유 : 19년 12월 국비확정내시로 본예산 미반영
- 사 업 량 : 배터리 31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전기자동차 등록 말소 후 발생하는 폐배터리 보관비용 지원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부품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사업 : 20,150천원 ○ 보관료 : 540천원 × 31대 = 16,740천원 ○ 포장비 : 100천원 × 31대 = 3,100천원 ○ 절연처리비 : 10천원 × 31대 = 31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150			20,150	20,150		신규
국 비	10,075			10,075	10,075		
도 비	10,075			10,075	10,075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대기관리팀	이명수 (행) 2740	류광하 (행) 4407	이선아 (행) 4426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정책사업	열린환경정책구현
	단위사업	환경행정 협력 강화
	세부사업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환경오염도 현황과 주민건강조사를 통해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주민 건강피해 예방·관리
- 사업 위치 : 당진 철강단지 주변
- 사업 기간 : 2020. 9. ~ 2021. 7.
- 예 산 액 : **150,000천원**
 ※ 증액 사유 : 자치단체간부담금 50,000천원 증액(농산물 중금속 분석 및 개인행동패턴 분석 추가)
- 사 업 량 : 당진 철강단지 주변 주민 8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노출조사, 주민 건강검진 및 중금속 등 생체 모니터링, 주민 위해도 소통, 추적조사 방안 마련, 농산물 중금속 분석, 개인행동패턴 분석
- 지원근거 : 충청남도 환경보건조례 제29조

충청남도 환경보건조례 제2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2.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 150,000천원 ○ 인건비 : 65,697,345원 ○ 경비 : 69,167,050원 - 여비 : 11,499,600원 - 인쇄비 : 3,165,100원 - 환경오염조사분석비 : 10,325,000원 - 건강검진비 : 11,532,000원 - 생체 모니터링비 : 11,200,000원 - 농산물 노출조사 : 13,425,350원 - 전산처리비 : 600,000 원 - 소모품비 : 3,200,000원 - 회의비 : 4,220,000원 ○ 일 반 관 리 비 : 1,500,000 ○ 부가가치세 : 13,636,439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50,000	200,000	100,000	150,000	50,000	300,000	
국 비							
도 비	500,000	200,000	100,000	100,000		200,000	
시군비							
기 타	150,000			50,000	50,000	100,000	

* 보조율 : 도비 67%, 기타(시군부담금) 3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4,620	30,450	0	35.9%	54,17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2019.10.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환경보건팀	이명수 (행) 2740	김옥선 (행) 4408	정황진 (행) 4429

태안군 환경보건센터운영사업	정책사업	열린환경정책구현
	단위사업	환경행정 협력 강화
	세부사업	환경보건센터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환경부에서 지정한 환경보건센터를 통해 '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릿 유류유출사고 이후 피해지역 유류오염과 환경성질환의 상관성 규명,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 건강보호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 사업 기간 : 2020. 1. ~ 2020.12.
- 예 산 액 : **303,000천원**
※ 증감 사유 : 2019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국비 증액(272,234 → 303,000)
- 사 업 량 : 환경보건센터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태안군
- 사업 내용 : 유류오염 관련 환경요인과 질환간 상호작용연구, 환경성 질환 DB구축,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등
- 지원근거 : 환경보건법 제26조 제3항

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③ 국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된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태안군 환경보건센터운영사업 467,400천원 (국비 303,000 시군비 164,400) ○ 환경요인과 질환 간 상호작용 연구 67,146천원 ○ 환경성질환 DB구축 91,387천원 ○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14,250천원 ○ 센터협업 사업 15,582천원 ○ 환경보건센터 운영경비 279,035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100,633	3,699,233	436,634	467,400	30,766	934,000	
국 비	4,608,233	3699233	272,234	303,000	30,766	606,000	
도 비							
시군비	492,400		164,400	164,400		328,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64.8%, 시군비 35.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72,234	272,234		100%	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환경보건팀	이명수 (행) 2740	김옥선 (행) 4408	정황진 (행) 4429

2021~20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용역	정책사업	열린환경정책구현
	단위사업	환경행정 협력 강화
	세부사업	2021~20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용역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과 연계하여, 충남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구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0. ~ 2021. 8.(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
 - ※ 증감 사유 : 국가환경보건종합계획이 2020년 하반기 하달(11~12월) 예정에 따라, 신속집행 등의 사유로 제2회 추경에 계상
- 사 업 량 :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환경보건 현황 및 전망, 환경보건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여건변화 분석, 정책목표별 중점사업과 실천과제 발굴, 재정투자 및 재원 조달방안,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2021~2030)」 수립
- 지원근거 : 충청남도 환경보건조례 제9조

충청남도 환경보건조례 제9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 ①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 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하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보건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1~20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용역 ≍ 100,000천원 ○ 인건비 : 68,941,896원 ○ 경비 : 13,365,500원 - 국내여비 : 2,162,500원 - 인쇄비 : 7,403,000원 - 전산처리비 : 600,000원 - 소모품비 : 800,000원 - 회의비 : 2,400,000원 ○ 일반관리비 : 8,436,508원 ○ 부가가치세 : 9,074,39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100,000	100,000		신규
국 비							
도 비	100,000			100,000	10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2019.10.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환경보건팀	이명수 (행) 2740	김옥선 (행) 4408	정황진 (행) 4429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임산부 등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정책사업	열린환경정책구현
	단위사업	환경행정 협력 강화
	세부사업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임산부 등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출산부 및 영아의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통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환경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 사업 위치 : 4개 시·군(보령·당진·서천·태안) 석탄화력발전소 5km 내 임산부 가정
- 사업 기간 : 2020. 5. ~ 2020.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60,000천원
- ※ 증감 사유 : 발전3사의 기부금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에 따른 사업 추진
- 사 업 량 : 2019년 출생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109대 보급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공모를 통한 사업자(공기청정기 판매업) 선정
- 사업 내용 : 4개 시·군 석탄화력발전소 5km 내 임산부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
- 지원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임산부 가정 등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60,000천원 ○ 구입비 : '19년 출생아 기준 109명(보령 24명, 당진 55명, 서천 20명, 태안 10명) × 550,000원/가정 ≒ 60,000천원/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0,000			60,000	60,000		신규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60,000			60,000	60,000		기부금 등

* 보조율 : 기타(기부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환경보건팀	이명수 (행) 2740	김옥선 (행) 4408	정황진 (행) 4429

환경보건열린포럼 운영사업(부서이관)	정책사업	열린환경정책구현
	단위사업	환경행정 협력 강화
	세부사업	환경보건열린포럼 운영사업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의 환경보건 과제와 정책 등을 공론화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의장 운영
※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예산 이관(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 미세먼지대책과)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 사업 기간 : 2020. 5. ~ 2020. 12.
- 예 산 액 : 20,000천원
- 사 업 량 : 연 1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공모 결과에 따라 결정
- 사업 내용 : 민·관·산·학·연 등 환경보건 전문가와 충남 환경보건 열린포럼 운영
- 환경보건 핵심주제 선정, 정기 워크숍 개최, 자료집 및 활동성과물 제작
- 지원근거 : 충청남도 환경보건조례 제29조,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2017 ~ 2020)

충청남도 환경보건조례 제2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환경보건열린포럼 운영 : 20,000천원 ○ 열린포럼(1회) : 20,000천원 - 인건비 : 2,430천원×10%×4인×8월 = 7,776천원 - 여비 : 40천원×4인×4회 = 640천원 - 회의비 : 2,400천원 · 발표비 : 300천원×5인×1회 = 1,500천원 · 토론비 : 150천원×6인×1회 = 900천원 - 인쇄비 : 3,600천원 · 자료집 제작비 : 15천원×100부×1회 = 1,500천원 · 성과집 제작비 : 35천원×60부×1회 = 2,100천원 - 기타(다과 및 우편통신비 등) : 1,584천원 - 임차비(통신장비 등) : 4,000천원×1회 = 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000			20,000	20,000		
국 비							
도 비	20,000			20,000	2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000	2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환경보건팀	이명수 (행) 2740	김옥선 (행) 4408	정만석 (행) 4430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관리과

1. 환경보건열린포럼 운영사업(부서이관) .. 84
2. 환경오염신고(128) 포상금 86
3.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포상 88
4.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90
5. 서북부권환경관리단 운영 92
6. 1회용품 줄이기 버스킹 사업 94
7. 서산시 환경종합타운 주변마을 지원사업 · 96
8. 공동주택 재활용 배출장 시설 98

환경보건열린포럼 운영사업(부서이관)	정책사업	열린환경정책구현
	단위사업	환경행정 협력강화
	세부사업	환경 안전망구축
	통 계 목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의 환경보건 과제와 정책등을 공론화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의장 운영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0천원**
 - ※ 감액 사유 : '20.1.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예산 이관 (환경안전관리과 → 미세먼지대책과)
- 사 업 량 : 연 4회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위탁
- 사업시행주체 : 충남연구원
- 사업 내용 : 민·관·산·학·연 등 환경보건 전문가와 충남 환경보건 열린포럼 운영
 - 환경보건 핵심주제 선정, 정기 워크숍 개최(4회), 자료집 및 활동성과물 제작
- 지원근거 : 충청남도 환경보건조례 제29조,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2017 ~ 2020)

충청남도 환경보건조례 제2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환경보건열린포럼 운영사업 : 0천원 ○ 환경보건열린포럼 운영사업 : 0천원 ·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예산 이관 (환경안전관리과 →미세먼지대책과)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20,000		△20,000		
국 비							
도 비	0		20,000		△2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000	20,0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관리팀	송영호 (행) 2720	이용현 (행) 4431	주희선 (행) 4442

환경오염신고(128) 포상금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환경오염 관리
	세부사업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통 계 목	기타보상금 (301-1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3,000천원**
 - ※ 증액 사유 :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의 규정
- 사 업 량 : 신고 건수당 최소 30천원에서 최대 3,000천원 지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도민
- 사업 내용 :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지원근거 : 충청남도 환경기본 조례 제15조,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6조

충청남도 환경기본 조례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 ④ 도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으며, 기타 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6조(지급기준)

- ① 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별표”와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은 제2조 규정에 해당되는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모든 오염행위의 신고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별도의 신고포상금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 ③ 하나의 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 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환경오염신고(128) 포상금 : 3,000천원 (도비 3,000천원) ○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 최고 3,000, 최저 100 ○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 최고 500, 최저 30 ○ 배출과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 최고 500, 최저 3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		1,000	3,000	2,000	0	
국 비							
도 비	3,000		1,000	3,000	2,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	700	300	7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지도팀	송영호 (행) 2720	최재성 (행) 4433	최재호 (행) 4446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포상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환경오염관리
	세부사업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통 계 목	포상금 (3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미세먼지 등 환경보전 취약분야의 성과향상 보상지급으로 업무독려 및 사기진작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전지역(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 관련 지원예산 확보에 따른 시·군 지원 포상금(303-01) 예산 일괄 삭감
- 사 업 량 : 환경관리 실태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상위 6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시군별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단속률, 환경민원 처리,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 등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평가 후 우수시군에 대한 포상금 지급(상위 6개시·군)
- 지원근거 :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15조 등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도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1288호)

제7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 ②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도·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시·군·구별 환경관리실태 평가 및 평가결과 우수사례 포상 방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징수비용의 지급) ②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급된 징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3. 신규부과대상 발굴자, 체납액 징수자 및 징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포상 : 0천원 ○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포상 : 0천원 · 코로나-19관련 지원예산 확보에 따른 시·군 지원 포상금(303-01) 예산 일괄 삭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0		20,000		△20,000		
국 비	0						
도 비	0		20,000		△20,000		
시군비	0						
기 타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000	2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관리팀	송영호 (행) 2720	이용현 (행) 4431	주희선 (행) 4442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환경오염 관리
	세부사업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통 계 목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

□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4.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 2,300,000천원(국비 1,380,000 도비 460,000 자부담 460,000) ○ 설치비 : 1,724,000천원 - TMS 설치비 431,000천원 * 4개소 = 1,724,000천원 ○ 유지관리비 : 576,000천원 - 정도검사·유지관리 18,000천원 * 굴뚝 32개소 = 576,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300,000		3,770,000	2,300,000	△1,470,000		
국 비	1,380,000		1,610,000	1,380,000	△230,000		
도 비	460,000		550,000	460,000	△90,000		
시군비							
기 타	460,000		1,610,000	460,000	△1,150,000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60%, 도비 20%, 자부담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690,000	1,008,936	2,128,088	27.34	552,97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지도팀	송영호 (행) 2720	최재성 (행) 4433	임나래 (행) 4447

서북부권환경관리단 운영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환경오염 관리
	세부사업	서북부권 환경관리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2-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조직개편('20.1.1.)에 따른 서북부권지역에 전담 관리팀을 운영하여,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환경오염사고 신속대응, 환경민원현장대응 업무 수행
- 사업 위치 : 서북부권환경관리단(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301-28)
- 운영 기간 : '20. 1. 1. ~ 지속(신규사업)
- ※ 증액 사유 : 2020.1.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팀으로 운영비 계상**
- 예 산 액 : **40,300천원**
- 사 업 량 : 서북부권관리단 운영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운영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사무실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환경오염 사고 현장대응 방제장비 구입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기후환경국)

⑤ 환경안전관리과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3.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 추진
4. 화학사고시 주민지원 및 사후영향조사 추진
19.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3. 환경감시협의회 및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서북부권환경관리단 운영 : 40,300천원 (도비 40,300천원) ○ 서북부권환경관리단 운영 (사무관리비) : 33,300천원 · 차량 하이패스 운영 교통비 : 600천원 · 화학사고 대응장비(흡착분, 방제복, 안전화, 안전복, 방진마스크) 구입 : 12,000천원 · 사무용품(프린터 등) 렌탈 : 150천원 × 8개월 = 1,200천원 · 관리단 간판설치 및 사무실운영 사무관리비 : 5,000천원 · 사무실 파티션 등 설치 비용(20.9월 사무실 이전 설치) : 5,500천원 · 화학사고 대응 공유 앱 위탁관리비 9,000천원 × 1식 = 9,000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서북부권환경관리단 운영 (공공운영비) : 7,000천원 · 공과금(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650천원/월 × 8개월 = 5,200천원 · 경비·근태관리 200천원/월 × 8개월 = 1,600천원 · 우편발송료 = 2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0,300			40,300	40,300		신규
국 비							
도 비	40,300			40,300	40,3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서북부권환경관리팀	송영호 (행) 2720	정도영 (행) 6908	조남황 (행) 6944

1회용품 줄이기 버스킹 사업	정책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단위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세부사업	자원순환 사회 조성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 1회용품 줄이기 **홍보**
- 사업 위치 : 도 내 생태여행지 등 10개 장소
- 사업 기간 : '20. 5. 1. ~ '20.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
- ※ 증액 사유 : 도민 1회용품(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 사 업 량 : **버스킹** 10회
- 사업시행방법 : 지원(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공모)
- 사업 내용 : 도민 1회용품(플라스틱) 줄이기 환경운동으로 순환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 고취
- 지원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 제1항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 1회용품 줄이기 버스킹 : 50,000천원 (도비 50,000) ○ 공연인건비 : 25,000천원 · 공연비 2,300천원/회 × 10회 + 공연사회비 200천원/회 × 10회 = 25,000천원 ○ 회의비 : 2,400천원 · 50천원/인·회 × 6인 × 8회 = 2,400천원 ○ 행사 운영비 : 22,600천원 · 홍보비 8,350천원 + 다과 및 식비 3,300천원 + 공연장비 대여 8,850천원 + 교통비 2,100천원 = 22,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50,000	50,000		신규
국 비							
도 비	50,000			50,000	5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자원순환팀	송영호 (행) 2720	이경석 (행) 4435	류소리 (행) 4452

서산시 환경종합타운 주변마을 지원사업	정책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단위사업	폐기물의 안정적처리 및 관리
	세부사업	자원순환 사회 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서산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환경종합타운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복지 증진 향상
- 사업 위치 : 서산시 남부순환로 767
- 사업 기간 : '20. 6월. ~ '20.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70,000천원**
- ※ 증액 사유 : 서산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 환경종합타운 주변마을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사 업 량 : 아파트 방범 CCTV 설치 100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
- 사업 내용 : 서산시 환경종합타운* 반경 3km내 위치한 삼성아파트 단지 내 방범용 CCTV 설치
*환경종합타운 : 지붕형 매립시설 (124,800m³) 및 재활용 선별시설(30톤/일)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서산시 환경종합타운 주변마을 지원사업 : 140,000천원(도비 70,000 시비 70,000) ○ 아파트 방범용 CCTV 설치 : 140,000천원 · 설계비 12,000,000원 × 1식 = 12,000천원 · 옥상 CCTV 1,600,000원(단가)×36대(수량) = 57,600천원 · 승강기 CCTV 1,100,000원(단가)×32대(수량) = 35,200천원 · 공동현관 CCTV 1,100,000원(단가)×32대(수량) = 35,2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40,000			140,000	140,000		신규
국 비							
도 비	70,000			70,000	70,000		
시군비	70,000			70,000	7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관리팀	송영호 (행) 2720	이용현 (행) 4431	주희선 (행) 4442

공동주택 재활용 배출장 시설	정책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단위사업	폐기물의 안정적처리 및 관리
	세부사업	자원순환 사회 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시설 설치로 주민배출편의 증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0. 5. 1. ~ 2020.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9,000천원**
 - ※ 증액 사유 :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 배출·수거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 사 업 량 : 공동주택 재활용 배출시설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공동주택 내 재활용품 배출시설 설치
- 지원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동주택 재활용 배출장 시설 : 30,000천원 (도비 9,000 시비 21,000) ○ 공동주택 재활용 배출장 설치 1식 = 30,000천원 · 재활용 배출시설 프레임 = 10,500천원 · 재활용품 수거함 = 1,500천원 · CCTV(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 3,000천원 x 6개 = 1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30,000	30,000		신규
국 비							
도 비	9,000			9,000	9,000		
시군비	21,000			21,000	21,000		
기 타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자원순환팀	송영호 (행) 2720	이경석 (행) 4435	류소리 (행) 4452

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과

1. 물 사랑 한마당 행사	106
2. 수질오염총량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108
3. 금강수계 유역관리 업무추진	110
4. 생태하천 복원사업(전환사업)	112
5.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	114
6.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116
7.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	118
8.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120
9. 마을 및 지방상수도 설치 지원	122
10. 충청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	124
11.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26
12.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지역자율)	128
13. 옥내배관 세척	130
14. 하수관거 정비	132
15. 도시침수 대응	134
16. 공공하수처리시설	136
17.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138
18. 분뇨처리시설	140
19.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142
20.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44
21. 빗물저장장치 설치사업(도민참여)	146

물 사랑 한마당 행사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수질환경 보전 관리
	세부사업	물 사랑 한마당 행사 개최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3. 22)』을 맞이하여 가뭄, 물산업 등 사회적 이슈와 연계, 물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2,50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본행사(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취소 후 초·중학생 대상 그림 공모전만 개최하는 것으로 행사 축소
- 사 업 량 : 물 사랑 한마당 행사 개최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등 위탁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세계 물의 날과 연계하여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이 참여하는 물 사랑 한마당 개최
- 위탁근거 :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8조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8조

① 도지사는 효율적 물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등 각종 물관련 국제행사(박람회, 포럼 등을 말한다) 등을 도내 주민, 기업,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물 사랑 한마당 행사 : 2,500천원(도비2,500천원) ○ 인건비 : 250천원 - 2,477천원/월 * 2개월 * 1인 * 5%(참여율) = 250천원 ○ 그림공모전 : 2,200천원 - 홍보인쇄물 600천원 + 심사수당 600천원 + 액자제작 350천원 + 시상식 등 행사진행 650천원 = 2,200천원 ○ 기타경비(일반관리비) : 5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500		80,000	2,500	△77,500	0	
도 비	2,500		80,000	2,500	△77,50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000	7,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팀	박상환 (행) 2730	이종현 (행) 4461	이돈우 (행) 4471

수질오염총량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수계 청정 관리
	세부사업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금강수계 8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54,000천원**
- ※ 증감 사유 :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인건비 감액
- 사 업 량 : 전문인력 1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변경) 수립, 시·군 시행계획 승인 등 업무
- 지원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3.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
4.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수질오염총량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 54,000천원(국비 54,000천원) ○ 기본급 : 3,619 * 12월 = 43,428천원 ○ 급량·교통비 : 180 * 12월 = 2,160천원 ○ 상여금 : 정기상여금 800 + 명절휴가비 400 = 1,200천원 ○ 시간외수당 등 : 3,712천원 ○ 4대보험(개인부담금) : 3,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4,000	0	55,000	54,000	△1,000	0	
국 비	54,000		55,000	54,000	△1,000		기금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4,000	54,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유역관리팀	박상환 (행) 2730	김학중 (행) 4462	임나슬 (행) 4483

금강수계 유역관리 업무추진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관리
	단위사업	수계 청정 관리
	세부사업	기금사업 관리비
	통 계 목	국내여비 (2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금강수계 관리기금 사업 및 유역관리 업무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금강수계 8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6,000천원**
 - ※ 증감 사유 :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여비 감액
- 사 업 량 : 국내여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금강수계 관리기금 사업 및 유역관리 업무추진 여비
- 지원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3.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
4.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10.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금강수계 유역관리 업무추진 여비 ○ 국내여비 : 6,000천원(국비 6,000천원) ※ 금강수계관리기금 일정액 지원(금강유역환경청)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000		7,000	6,000	△1,000		
국 비	6,000		7,000	6,000	△1,000		기금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000	7,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유역관리팀	박상환 (행) 2730	김학중 (행) 4462	임나슬 (행) 4483

생태하천 복원사업(전환사업)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수계 청정 관리
	세부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환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 사업 위치 : 6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11,964,000천원**
- ※ 증감 사유 : 당진시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세부 추진내역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감액
- 사 업 량 : 9개 하천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6개 시·군(천안, 아산, 서산, 논산, 당진, 예산)
- 사업 내용 : 오염퇴적물 준설, 생태호안, 여울, 정화습지, 어도조성, 하천정비 식생복원 등
- 지원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3조, 제69조

- 물환경보전법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69조(국고 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생태하천 복원사업(6개 시·군 9개 하천) : 23,048,000천원(도비 11,964,000, 시군비 11,084,000) ○ 천안시(쌍정천) : 1,000,000천원(도비 500,000, 시군비 500,000) ○ 아산시(운양천) : 944,000천원(도비 472,000, 시군비 472,000) ○ 아산시(오목천) : 2,200,000천원(도비 1,100,000, 시군비 1,100,000) ○ 서산시(기포천등) : 10,000,000천원(도비 5,000,000, 시군비 5,000,000) ○ 논산시(대흥천) : 1,700,000천원(도비 850,000, 시군비 850,000) ○ 당진시(역천) : 2,654,000천원(도비 1,592,000, 시군비 1,062,000) ○ 당진시(남원천) : 2,000,000천원(도비 1,000,000, 시군비 1,000,000) ○ 예산군(무한천) : 1,750,000천원(도비 1,050,000, 시군비 700,000) ○ 예산군(효교천) : 800,000천원(도비 400,000, 시군비 4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32,521,000	53,597,000	23,198,000	23,048,000	△150,000	55,876,000	전환사업
도 비	39,902,000	-	12,054,000	11,964,000	△90,000	27,938,000	
시군비	92,619,000	53,597,000	11,144,000	11,084,000	△60,000	27,938,000	

* 보조율 : '12~'13년 시작사업 도비 60% 시·군비 40% / '14년 이후 시작사업 도비 50% 시·군비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54,000	10,054,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충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유역관리팀	박상환 (행) 2730	김학중 (행) 4462	임나슬 (행) 4483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수계 청정 관리
	세부사업	축산악취 개선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축사 이전·휴업으로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 사업 위치 : 내포신도시 5km 이내
- 사업 기간 : 2020. 5. ~ 2020.12.
- 예 산 액 : 290,000천원
- ※ 증감 사유 :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휴업(2단계) 계획 수립('20.3.)에 따라 내포신도시 주변 노후 축사의 이전·휴업으로 근본적인 악취 해결을 위해 신규 계상
- 사 업 량 : 돈사 2개소(홍성 1, 예산 1)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 예산군
- 사업 내용 :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 및 축사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 시행조례」 제19조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 특별법 시행조례」 제19조(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개발예정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축사를 이전·폐업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에 따른 보상지원: 580,000천원(도비 290,000, 시군비 290,000) ○ 영업손실보상, 시설보상, 시설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기타(감정평가, 설계용역)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680,000	3,100,000		580,000	580,000		
도 비	1,840,000	1,550,000		290,000	290,000		
시군비	1,840,000	1,550,000		290,000	290,00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유역관리팀	박상환 (행) 2730	김학중 (행) 4462	김은영 (행) 2732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수계 청정 관리
	세부사업	축산악취 개선 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인접 시·군 간 경계지역 축사 입지에 따른 민원발생 등 갈등 사전 예방을 위해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5 ~ 2020.12.(신규사업)
- 예 산 액 : **135,000천원**
 - ※ 증감 사유 :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 체결('20.2, 지방정부회의) 후속조치로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위해 신규 계상
- 사 업 량 : 지형도면 작성 용역 15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시·군 경계지역에 대한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후 지형도면 작성·고시
- 지원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 450,000천원(도비135,000 시·군비315,000) ○ 지형도면 작성 용역 15식 × 30,000천원 = 4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50,000	0	0	450,000	450,000	0	신규
도 비	135,000			135,000	135,000		
시군비	315,000			315,000	315,00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유역관리팀	박상환 (행) 2730	김학중 (행) 4462	김은영 (행) 2732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	정책사업	수질보전 개선·관리
	단위사업	수계 청정 관리
	세부사업	공중화장실 설치개선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고품격 공중화장실 조성 및 노후·불량시설 개보수를 통한 아름다운 충남 이미지 제고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848,000천원**
- 사 업 량 : 공중화장실 설치 23개소 및 개보수 8개소
 - ※ 증감 사유 : 주민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 3개소 추가 설치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4개 시·군
- 사업 내용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 지 원 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 : 2,740,000천원(도비848,000 시·군비1,892,000) ○ 건축형 : 200,000천원 × 2개소 = 400,000천원 ○ 건축형(청양) : 400,000천원 × 1개소 = 400,000천원 ○ 간이형 : 70,000천원 × 17개소 = 1,190,000천원 ○ 개보수 : 60,000천원 × 8개소 = 480,000천원 ○ 첨단간이 화장실 3개소 : 270,000천원(도비107,000 시·군비163,000) - 아산시 배방정 : 60,000천원(도비30,000 시비30,000) - 당진시 오룡산 등산로 : 70,000천원(도비35,000 시비35,000) - 금산군 한길공원 : 140,000천원(도비42,000 군비98,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740,000		2,470,000	2,740,000	270,000		
도 비	848,000		741,000	848,000	107,000		
시군비	1,892,000		1,729,000	1,892,000	163,00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76,000	1,076,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유역관리팀	박상환 (행) 2730	김학중 (행) 4462	임나슬 (행) 4483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세부사업	노후상수관망정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녹물발생, 이물질 유입 예방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 누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 및 가뭄 대응,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를 구축
- 사업 위치 : 11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 ~ 2020.12.
- 예 산 액 : **39,706,740천원**
※ 재원변경 사유 : 코로나 19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재원변경[도비 → 기금]
- 사 업 량 : 11개 지구
- 사업시행방법 : 지원(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1개 시군
- 사업 내용 : 관망정비, 누수탐사/복구,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 지원근거 : 수도법 제75조, 제2조

수도법 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 11개시·군 11개지구 : 56,682,900천원 (국비 30,944,000, 도비 1,482,940, 기금 7,279,800, 시군비 16,976,160) - 천안시 : 3,782,000천원(국 1,891,000, 도 229,760, 기 337,540, 시 1,323,700)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 공주시 : 3,386,000천원(국 1,693,000, 도 507,900, 시 1,185,100) - 보령시 : 7,070,000천원(국 3,535,000, 기 1,060,500, 시 2,474,500) - 서산시 : 2,880,000천원(국 1,440,000, 도 432,000, 시 1,008,000) - 당진시 : 3,238,800천원(국 1,943,000, 기 518,240, 시 777,560) - 부여군 : 6,420,000천원(국 3,852,000, 기 1,027,200, 군 1,540,800) - 서천군 : 6,682,000천원(국 4,009,000, 기 1,069,120, 군 1,603,880) - 청양군 : 1,958,100천원(국 1,175,000, 도 313,280, 군 469,820) - 홍성군 : 7,724,000천원(국 3,862,000, 기 1,158,600, 군 2,703,400) - 예산군 : 7,730,000천원(국 4,638,000, 기 1,236,800, 군 1,855,200) - 태안군 : 5,812,000천원(국 2,906,000, 기 871,800, 군 2,034,2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49,310,900	60,112,903	56,682,900	56,682,900	0	32,515,097	
국 비	84,246,000	37,045,000	30,944,000	30,944,000	0	16,257,000	균 특
도 비	22,656,022	9,016,018	8,762,740	1,482,940	△7,279,800	4,877,264	
지역개발기금	0	0	0	7,279,800	7,279,800	0	
시군비	42,408,878	14,051,885	16,976,160	16,976,160	0	11,380,833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70%, 도비(기금) 15~16%, 시군비 15~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7,028,846	37,028,846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박상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임성민 (행) 4480

마을 및 지방상수도 설치지원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세부사업	일반수도 사업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수원 확보가 곤란한 오지 및 산간지역에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의 보건위생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 위치 : 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 ~ 2020.12.
- 예 산 액 : **962,000천원**
 - ※ 증감 사유 : 상수도 소외계층의 안정적인 물공급 필요로 마을 및 지방상수도 매설
- 사 업 량 : 마을 및 지방상수도의 매설 등 1식
- 사업시행방법 : 지원(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5개 시·군
- 사업 내용 : 마을 및 지방상수도 관로매설 등 상수도 시설 확충
- 지원근거 : 수도법 제2조

수도법 제2조(책무)

-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마을 및 지방상수도 설치지원 ○ 대상 : 5개 시·군 2,024,000천원 (도 962,000, 시·군 1,062,000) - 공주시 : 200,000천원(도 50,000, 시 150,000) - 금산군 : 400,000천원(도 200,000, 군 200,000) - 부여군 : 424,000천원(도 212,000, 군 212,000) - 청양군 : 400,000천원(도 200,000, 군 200,000) - 태안군 : 600,000천원(도 300,000, 군 3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8,088,000	16,064,000	1,600,000	2,024,000	424,000	0	
도 비	8,734,000	7,772,000	750,000	962,000	212,000		
시군비	9,354,000	8,292,000	850,000	1,062,000	212,00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012,000	6,012,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충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박상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임성민 (행) 4480

충청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세부사업	충청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충청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법정계획]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 ~ 2020.12.
- 예 산 액 : 159,000천원
 - ※ 증감 사유 : 계약심사결과 감액 결정으로 예산 조정
- 사 업 량 : 충청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청남도 물수요관리 목표의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지원근거 : 수도법 제6조

수도법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6. 8.>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 충청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1식 : 159,000천원 (도비 100%) - 당초 용역 예정가격을 180백만원 산정하였으나, 계약심사 결과 제경비 및 기술료 조정하여 예정가격을 159백만원으로 감액하여 예산절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59,000	0	180,000	159,000	△21,000	0	
도 비	159,000	-	180,000	159,000	△21,00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박상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임성민 (행) 4480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세부사업	지하수통합관리운영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국 최초 지하수 정보를 통합 연계 분석 시스템인 충청남도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운영 관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청
- 사업 기간 : 20. 1. ~ 20. 12.
- 예 산 액 : 58,000천원
 - ※ 증감 사유 : 유지관리 용역 사업 발주 잔액 등
- 사 업 량 :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데이터 관리 및 유지보수)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하수 데이터 관리 및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 지원근거 : 지하수법 제5조의2

지하수법 제5조의2(지하수보전·관리의 정보화)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58,000천원 ○ 유지관리 용역비 : 58,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8,000	0	64,000	58,000	△6,000		
도 비	58,000		64,000	58,000	△6,00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4,000	60,808	3,192	9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지하수팀	박상환 (행) 2730	서정덕 (행) 4463	김해중 (행) 4482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지역자율)(19년분)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세부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지역자율) (19년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어촌지역(면단위)에도 도시수준의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 위치 : 6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5,992,000천원**
- ※ 증감 사유 : 2019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 미 교부액 2020년 교부
- 사 업 량 : 11개 지구
- 사업시행방법 : 지원(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6개 시군
- 사업 내용 : 농어촌지역의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상수도시설 확충
- 지원근거 : 수도법 제2조 및 제75조

수도법 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5,992,000천원(국비) - 천안시 : 1,297,000천원(2개 지구) - 당진시 : 1,000,000천원(3개 지구) - 금산군 : 473,000천원(1개 지구) - 부여군 : 1,542,000천원(2개 지구) - 청양군 : 285,000천원(1개 지구) - 예산군 : 1,395,000천원(2개 지구)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55,424,511	749,432,511	0	5,992,000	5,992,000	0	신규
국 비	523,705,000	517,713,000		5,992,000	5,992,000		
도 비	90,194,458	90,194,458			0		
시군비	138,172,053	138,172,053			0		
복권기금	3,353,000	3,353,000			0		

* 보조율 : '19년 국비매칭사업비 미교부액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5,188,571	69,196,571	5,992,000	92.03%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박상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임성민 (행) 4480

옥내배관 세척 사업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세부사업	옥내배관 세척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옥내배관 오염물 제거를 통하여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6. ~ 2020.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222,000천원
 - ※ 증감 사유 :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한 2020년 충청남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경반영
- 사 업 량 : 5,000세대 옥내배관 세척
- 사업시행방법 : 지원(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옥내배관 오염 등으로 수도꼭지에서 이물질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옥내 배관 세척
- 지원근거 : 수도법 제2조 및 제75조

수도법 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옥내배관 세척 사업 : 740,000천원 [도비 30% : 시군비 70%] ○ 산출 : 148천원 × 5,000세대 = 740,000천원 - 도비 : 740,000천원 × 30% = 22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40,000			740,000	740,000	0	신규
도 비	222,000			222,000	222,000		
시군비	518,000			518,000	518,00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충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박상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임성민 (행) 4480

하수관거 정비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하수도 관리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및 공공수역 수질개선 강화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66,125,000 천원**
-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역조정(2020.02.) 반영
- 사 업 량 : 48지구 하수관로 신설 및 교체
- 사업시행방법 : 지원(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4개 시군
- 사업 내용 :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신설·교체, 개·보수
- 지원근거 : 하수도법 3조 1항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하수관거정비 ○ 14개 시군 48지구 100,891,000천원(국 66,125,000, 시군 34,766,000) · 천안시 9지구 9,284,000천원(국 6,014,000, 시 3,270,000) · 공주시 3지구 3,386,000천원(국 2,070,000, 시 1,316,000) · 보령시 1지구 403,000천원(국 282,000, 시 121,000) · 아산시 4지구 12,448,000천원(국 8,095,000, 시 4,353,000) · 서산시 4지구 16,396,000천원(국 10,116,000, 시 6,280,000) · 논산시 3지구 2,547,000천원(국 1,531,000, 시 1,016,000) · 계룡시 1지구 2,574,000천원(국 1,287,000, 시 1,287,000) · 당진시 4지구 2,116,000천원(국 1,421,000, 시 695,000) · 금산군 5지구 2,482,000천원(국 1,464,000, 군 1,018,000) · 부여군 4지구 5,578,000천원(국 3,904,000, 군 1,674,000) · 서천군 2지구 3,710,000천원(국 2,360,000, 군 1,350,000) · 홍성군 2지구 1,615,000천원(국 1,130,000, 군 485,000) · 예산군 4지구 37,717,000천원(국 25,002,000, 군 10,715,000) · 태안군 2지구 2,635,000천원(국 1,449,000, 군 1,186,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13,058,000	625,323,431	104,128,000	100,891,000	△3,237,000	86,843,569	
국 비	542,039,000	421,951,000	66,853,000	66,125,000	△728,000	53,963,000	
시군비	271,019,000	203,372,431	37,275,000	34,766,000	△2,509,000	32,880,569	

* 보조율 : 신설(국비 70%, 시군비 30%), 교체·보수(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1,841,000	39,787,000	2,054,000	95%	0	국비미교부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박상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이양구 (행) 4478

도시침수 대응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하수도 관리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침수대응)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심 하수범람 및 침수방지
- 사업 위치 :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7,990,000 천원**
- ※ 증감 사유 : 환경부 지구간 내역조정 반영
- 사 업 량 :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 3지구
- 사업시행방법 : 지원(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 사업 내용 : 하수저류시설·펌프장 설치, 하수관로정비
- 지원근거 : 하수도법 3조 1항, 4조의3 4항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하수도법 제4조의3조(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시침수대응 ○ 3개 시군 3지구 10,114,000천원(국 7,080,000, 도 910,000, 시군 2,124,000) · 천안시 1지구 8,974,000천원(국 6,282,000, 도 808,000, 시 808,000) · 보령시 1지구 426,000천원(국 298,000, 도 38,000, 시 90,000) · 아산시 1지구 714,000천원(국 500,000, 도 64,000, 시 64,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75,472,000	202,599,400	9,688,000	10,114,000	426,000	62,758,600	
국 비	192,834,000	142,877,000	6,782,000	7,080,000	298,000	42,877,000	국고
도 비	24,764,000	18,067,000	872,000	910,000	38,000	5,787,000	
시군비	57,874,000	41,655,400	2,034,000	2,124,000	90,000	14,094,60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704,000	7,390,000	314,000	96%	0	국비미교부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박상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이양구 (행) 4478

공공하수처리시설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하수도 관리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시설)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및 공공수역 수질개선 강화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1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35,140,000천원**
 - ※ 증감 사유 :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역조정(2020.02.) 반영, 코로나 19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재원변경[도비 → 기금]
- 사 업 량 : 16지구 하수처리장 신설·개량
- 사업시행방법 : 지원(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1개 시군
- 사업 내용 : 하수처리장 신설·개량·증설
- 지원근거 : 하수도법 3조 1항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 11개 시군 16지구 43,379,000천원(국 26,901,000, 기 8,239,000, 시군 8,239,000) · 천안시 1지구 2,923,000천원(국 1,461,000, 기 731,000, 시 731,000) · 보령시 2지구 2,893,000천원(국 2,025,000, 기 434,000, 시 434,000) · 아산시 3지구 6,789,000천원(국 4,753,000, 기 1,018,000, 시 1,018,000) · 서산시 2지구 7,893,000천원(국 4,449,000, 기 1,722,000, 시 1,722,000) · 논산시 1지구 5,651,000천원(국 3,955,000, 기 848,000, 시 848,000) · 계룡시 1지구 714,000천원(국 500,000, 기 107,000, 시 107,000) · 당진시 1지구 440,000천원(국 308,000, 기 66,000, 시 66,000) · 부여군 2지구 2,212,000천원(국 1,548,000, 기 332,000, 군 332,000) · 서천군 1지구 515,000천원(국 257,000, 기 129,000, 군 129,000) · 예산군 1지구 4,858,000천원(국 3,400,000, 기 729,000, 군 729,000) · 태안군 1지구 8,491,000천원(국 4,245,000, 기 2,123,000, 군 2,123,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89,946,000	297,784,000	44,644,000	43,379,000	△1,265,000	48,783,000	
국 비	245,129,000	190,610,000	27,632,000	26,901,000	△731,000	27,618,000	
도 비	59,470,000	48,887,500	8,506,000	0	△8,506,000	10,582,500	
지역개발기금	8,239,000	0	0	8,239,000	8,239,000	0	
시군비	77,108,000	58,286,500	8,506,000	8,239,000	△267,000	10,582,500	

* 보조율 : 면지역[국비 70%, 도비(기금) 15%, 시군비 15%], 읍이상[국비 50%, 도비(기금)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1,482,143	31,482,143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박상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이양구 (행) 4478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하수도 관리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및 공공수역 수질개선 강화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2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23,326,000천원
-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역조정(2020.02.) 반영
- 사 업 량 : 52지구 소규모하수처리장(500m³/일 미만) 신설개량 및 하수관로 매설
- 사업시행방법 : 지원(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2개 시군
- 사업 내용 : 하수처리장 신설·개량·증설, 하수관로 매설
- 지원근거 : 하수도법 3조 1항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 12개 시군 52지구 27,450,000천원(국 19,202,000, 도 4,124,000, 시군 4,124,000) · 천안시 5지구 2,432,000천원(국 1,702,000, 도 365,000, 시 365,000) · 공주시 7지구 4,076,000천원(국 2,852,000, 도 612,000, 시 612,000) · 아산시 3지구 602,000천원(국 420,000, 도 91,000, 시 91,000) · 서산시 3지구 3,764,000천원(국 2,634,000, 도 565,000, 시 565,000) · 논산시 2지구 4,253,000천원(국 2,977,000, 도 638,000, 시 638,000) · 당진시 2지구 717,000천원(국 501,000, 도 108,000, 시 108,000) · 금산군 6지구 1,739,000천원(국 1,217,000, 도 261,000, 군 261,000) · 부여군 8지구 2,606,000천원(국 1,822,000, 도 392,000, 군 392,000) · 서천군 2지구 506,000천원(국 354,000, 도 76,000, 군 76,000) · 청양군 3지구 794,000천원(국 556,000, 도 119,000, 군 119,000) · 예산군 6지구 2,812,000천원(국 1,966,000, 도 423,000, 군 423,000) · 태안군 5지구 3,149,000천원(국 2,201,000, 도 474,000, 군 474,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67,115,000	362,715,568	27,719,000	27,450,000	△269,000	76,949,432	
국 비	326,996,000	253,935,000	19,391,000	19,202,000	△189,000	53,859,000	
도 비	65,672,000	50,003,272	4,164,000	4,124,000	△40,000	11,544,728	
시군비	74,447,000	58,777,296	4,164,000	4,124,000	△40,000	11,545,704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1,879,710	41,406,139	473,571	99%	0	국비미교부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박상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이양구 (행) 4478

분뇨처리시설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하수도 관리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분뇨처리시설)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및 공공수역 수질개선 강화
- 사업 위치 : 공주시 등 3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2,180,000천원
- ※ 증감 사유 :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역조정(2020.02.) 반영
- 사 업 량 : 3개 지구 분뇨처리시설 신설·개량
- 사업시행방법 : 지원(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서천군, 태안군
- 사업 내용 : 분뇨처리시설
- 지원근거 : 하수도법 3조 1항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분뇨처리시설설치 ○ 3개 시군 3지구 4,360,000천원(국 2,180,000, 시군 2,180,000) · 공주시 1지구 2,400,000천원(국 1,200,000, 시 1,200,000) · 서천군 1지구 688,000천원(국 344,000, 군 344,000) · 태안군 1지구 1,272,000천원(국 636,000, 군 636,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3,074,000	1,900,000	3,016,000	4,360,000	1,344,000	6,814,000	
국 비	6,537,000	950,000	1,508,000	2,180,000	672,000	3,407,000	
시군비	6,537,000	950,000	1,508,000	2,180,000	672,000	3,407,00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50,000	95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박상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이양구 (행) 4478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하수도 관리
	세부사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 및 공공수역 수질개선 강화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1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36,316,000천원**
- ※ 증감 사유 :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역조정(2020.02.) 반영
- 사 업 량 : 12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 시설임대료
- 사업시행방법 : 지원(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1개 시군
- 사업 내용 : 하수관로 정비 시설임대료
- 지원근거 : 하수도법 3조 1항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 11개 시군 12지구 51,887,000((국 36,316,000, 시군 15,571,000) · 천안시 2지구 13,451,000천원(국 9,415,000, 시 4,036,000) · 보령시 1지구 3,046,000천원(국 2,132,000, 시 914,000) · 아산시 1지구 7,125,000천원(국 4,987,000, 시 2,138,000) · 서산시 1지구 6,016,000천원(국 4,211,000, 시 1,805,000) · 논산시 1지구 2,842,000천원(국 1,989,000, 시 853,000) · 계룡시 1지구 2,908,000천원(국 2,035,000, 시 873,000) · 당진시 1지구 3,678,000천원(국 2,574,000, 시 1,104,000) · 금산군 1지구 2,962,000천원(국 2,073,000, 군 889,000) · 서천군 1지구 2,542,000천원(국 1,779,000, 군 763,000) · 홍성군 1지구 5,555,000천원(국 3,888,000, 군 1,667,000) · 예산군 1지구 1,762,000천원(국 1,233,000, 군 529,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32,652,000	485,360,000	51,848,000	51,887,000	39,000	195,405,000	
국 비	491,643,000	326,464,000	36,289,000	36,316,000	27,000	128,863,000	국고,
시군비	241,009,000	158,896,000	15,559,000	15,571,000	12,000	66,542,000	

* 보조율 : 국비 70%. 시군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6,671,000	36,506,000	165,000	99%	0	국비미교부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박상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이양구 (행) 4478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하수도 관리
	세부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의 정밀조사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
- 예 산 액 : 1,197,000천원
 - ※ 본예산 반영된 사업으로 목 변경<균형발전특별회계(511-02) → 국고보조금(511-01)>
- 사 업 량 :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4자구
- 사업시행방법 : 지원(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아산시, 청양군, 홍성군
- 사업 내용 :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 지원근거 : 하수도법 3조 1항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 4개 시군 4개 지구 2,394,000천원(도 1,197,000, 시군 1,197,000) · 천안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2,000,000천원(국 1,000,000, 시 1,000,000) · 아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202,000천원(국 101,000, 시 101,000) · 청양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144,000천원(국 72,000, 군 72,000) · 홍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48,000천원(국 24,000, 군 24,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394,000	0	2,394,000	2,394,000	0	0	목변경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국 비	1,197,000	0	1,197,000	1,197,000	0	0	
시군비	1,197,000	0	1,197,000	1,197,000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	박상환 (행) 2730	금기홍 (행) 4464	이양구 (행) 4478

빗물저장장치 설치사업(도민참여)	정책사업	수질보전·개선 관리
	단위사업	하수도 관리
	세부사업	빗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예 산 액 : 150,000천원

- 사업량 : 빗물저장장치 1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지원(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내용 : 빗물저장장치 설치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① 도지사는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시·군 또는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예산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평가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빗물저장장치 설치사업 지원 ○ 15개 시군 · 빗물저장장치 1식 = 300,000천원(도비 150,000, 시군비 150,000) ※ 2020년 도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으로 빗물저장장치 규모에 따라 사업비 상이하여 시군 수요조사 후 시행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300,000	300,000	0		목변경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도 비	150,000		150,000	150,000	0		
시군비	150,000		150,000	150,00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물통합관리팀	박상환 (행) 2730	도중원 (행) 4465	고승윤 (행) 2735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기 후 환 경 정 책 과

기후환경정책과

1.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156
2.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158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정책사업	기후변화대책추진
	단위사업	기후환경변화 조사, 평가, 연구(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부사업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환경기초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설치를 통한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 상쇄
- 사업 위치 : 당진시 고대공단 2길 190 등 3개소
- 사업 기간 : 2020. 3. ~ 12.
- 예 산 액 : **1,319,500천원**
 - ※ 감액 사유 : 천안시 국비 신청액(1,112백만원) 중 464백만원(41%) 반영으로 사업 차질에 따른 포기 1개소
- 사 업 량 : 태양광 설비 설치 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당진시
- 사업 내용 :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환경부 공모)
- 지원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20조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 ① 정부는 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2. 충청남도 에너지조례 제20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 제1항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 및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2.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산·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 2,030,000 천원(국 1,015,000 도 304,500 시군 710,500) ○ 보령 생활폐기물 처리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580,000 천원 ○ 당진 고대부곡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1,160,000 천원 ○ 당진 합덕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290,000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030,000		2,958,000	2,030,000	△928,000		
국 비	1,015,000		1,479,000	1,015,000	△464,000		
도 비	304,500		443,700	304,500	△139,200		
시군비	710,500		1,035,300	710,500	△324,8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744,600	1,744,6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책	남성연 (행) 2710	홍순만 (행) 4404	임 훈 (행) 4418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정책사업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단위사업	녹색산업 발굴 육성 (특정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세부사업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마을 공공시설에 온실가스 저감 시설 설치 및 주민 교육을 통한 기후위기에 앞서 대응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 사업 기간 : 2020. 5. ~ 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12,540천원
- ※ 신규편성 사유 : 한국서부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신규 사업 발굴('20. 2.)
- 사 업 량 : 2개 읍·면·동('20년 시범사업) ※ 효과 검증 후 '21년 확대 계획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마을회관,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등 대상 고효율 조명(LED) 교체, 노후 보일러 교체 및 배관 청소, 쿨루프 시공, 찾아가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기후변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의 감축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대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3.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장려 4. 친환경운동의 권장 5. 교육 및 홍보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 83,600천원[도비 12,540 시군 29,260 민간 41,800(한국서부발전)] ○ 고효율 조명(LED) 교체 자재비 : 500,000원 × 20개소 = 10,000천원 ○ 노후 보일러 교체(30평 기준) : 900,000원 × 20개소 = 18,000천원 ○ 보일러 배관 청소(30평 기준) : 280,000원 × 30개소 = 8,400천원 ○ 쿨루프 시공 자재비(30평 기준) : 1,000,000원 × 20개소 = 20,000천원 ○ 단열개선사업(문풍지 등) : 30,000원 × 30개소 = 900천원 ○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 15,000원 × 30개소 = 450천원 ○ 기후위기 교육 및 협의체 운영 : 25,850천원 - 주민 교육 강사비 : 200,000원 × 1명 × 30개소 = 6,000천원 (2시간 160,000원, 교통비40,000원) - 에너지 절약 홍보물품(멀티탭) : 15,000원 × 2개 × 30개소 = 900천원 - 친환경 제품 만들기 교육 재료 : 5,000원 × 20명 × 30개소 = 3,000천원 - 안심마을 현판제작 : 100,000원 × 30개소 = 3,000천원 - 사업 수용비(인쇄비, 다과, 출장비 등) : 265,000원 × 30개소 = 7,950천원 - 협의체 운영비 : 625,000원 × 1인 × 8개월 = 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3,600			83,600	83,600		신규
국 비							
도 비	12,540			12,540	12,540		
시군비	29,260			29,260	29,260		
민간(서부발전)	41,800			41,800	41,800		서부발전 부담

* 보조율 : 도비 15% 시군 35% 민간 50%(한국서부발전)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책팀	남성연 (행)2710	홍순만 (행)4404	정관용 (행)4421

미 세 먼 지 대 책 과

미세먼지대책과

1.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166
----------------------------	-----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정책사업	생활공해 관리
	단위사업	대기 개선(특정지역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부사업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지역의 도민건강보호를 위한 마을단위 저감조치 마련 필요
- 사업 위치 : 4개 시·군(보령, 서산, 당진, 태안) * 미세먼지 취약지역(발전) 주변 마을 5개소
- 사업 기간 : 2020.6.1.~2020.12.31.(신규사업)
- 예산액 : **90,000천원**
 - ※ 신규편성 사유 : 발전사 기부금을 재원으로 '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나, 발전사 내부사정에 따른 예산 미확보로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고 세목 변경 신규 편성
- 사업량 : 안심마을 조성 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4개 시군(보령, 서산, 당진, 태안)
- 사업 내용 : 마을단위 미세먼지 저감시설(식물정화벽, 미세먼지 쉼터, 살수노즐, 창틀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집중 설치
- 지원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 300,000천원 ○ 조성사업비 : 60,000천원/개소 * 5개소 · 식물정화벽 설치 : 5,000천원, 미세먼지 쉼터 조성 : 50,000천원, · 살수노즐 설치 3,000천원, 창틀형 저감장치 : 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300,000	300,000		신규사업
국 비							
도 비	90,000			90,000	90,000		
시군비	210,000			210,000	210,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응팀	이명수 (행) 2740	김미희 (행) 4406	김민정 (행) 4422